

의안번호	2204597
의 퇴 인	김원이 의원
회 답 일	2025. 1. 6.
추계번호	24A3991

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의2제6항 (한국탄소산업진흥원)	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<u>사업</u>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9조의2제6항 (한국탄소산업진흥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)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정부의 사업비 출연·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
 -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003.3. 재단법인 “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”로 설립되었으며, 2021.3.2. “한국탄소산업진흥원”으로 명칭 변경 후 업무를 개시하여 2022.2.8. 공공기관(기타공공기관)으로 신규 지정
- 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사업비 출연·보조 근거가 마련될 경우 향후 진흥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증가하여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
 -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“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” 사업을 통해 진흥원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
 - 2025년 운영비(인건비, 경상운영비 등) 지원 예산으로 91억 2,200만원이 편성되었고, 사업비(탄소융복합 소재·부품 실증 사업, 장비국산화 지원 등 기반조성 사업 등)

지원 예산으로 223억 3,700만원 편성

* [참고자료]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현황

- 개정안에 따라 진흥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될 경우 기존에 실시 중인 사업비 지원 예산을 증액하거나, 해당 규정을 근거로 신규 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기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거나 신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나, 추계에 필요한 지원 기준 및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려면 진흥원이 향후 추진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재원 투입 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
 - 그러나 기존 사업비 지원 예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 알 수 없으며,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추계에 필요한 사업량 및 단가 등도 재원 추가 투입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에 진흥원에 대한 정부의 사업비 출연·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]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	2025년도 예산
[일반회계-산업통상자원부]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(R&D)(3637-301)			31,459
운영비	-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·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관 운영·관리		9,122
사업비	-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 · 수요확대 및 시장창출, 국내외 판로확보 및 해외진출 촉진, 기술·품질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5대 핵심 수요산업 실증지원, 국제협력 및 해외수출지원 등의 사업 추진		22,337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